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2000. 2. 1  
관광건설위원장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1차관광건설위원회(2000. 1. 28)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)

### 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고, 효율적인 기금운용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직개편으로 기금관리자 명칭 변경
  -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
  - 기금분임운용관을 재난관리과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
  - 기금출납원을 재난총괄담당에서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직제와 관장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붙임 서류 :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,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재난총괄담당”을 “안전관리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(생략)	제1조(목적)(현행과 같음)
제2조(기금의 조성)(생략)	제2조(기금의 조성)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(생략)	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용도)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회계공무원)①(생략)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<u>자치행정국장</u>으로,  기금분임운용관은 <u>재난관리과장</u>으로,  기금출납원은 <u>재난총괄담당</u>으로  한다</p>	<p>제5조(회계공무원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<u>건설교통국장</u>.....  ..... <u>안전관리과장</u>.....  ..... <u>안전관리담당</u>.....  .....</p>
제6조(기금의 회계관리)(생략)	제6조(기금의 회계관리)(현행과 같음)
제7조(결산·및 보고)(생략)	제7조(결산 및 보고)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행규칙)(생략)	제8조(시행규칙)(현행과 같음)